



'91한국양계박람회 개최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올림픽공원서

양계인의 사기진작과 선진양계산업화의 진입을 위한 양계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제고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양계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본회가 주최하여 개최되는 '91한국양계박람회가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올림픽공원내 제2체육관(펜싱)·제3체육관(역도)에서 열린다.

축산업중 생산자들이 주축이 되어 박람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전시행사를 통하여 정보제공은 물론 양계인대회 등을 개최하여 단결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시행사에는 기자재 및 시설전시에 국내외 기자재업체 120여개사에서 100여종의 제품을 전시하게 된다.

이밖에도 가금류 전시, 가금류 알 전시, 병아리 부화과정 전시, 한국양계발달사 전시, 정책홍보

전시, 홍보포스터 전시행사가 있으며, 소비홍보를 위해 전국닭고기 요리솜씨대회 제7회 본선대회가 열리며, 우수양계인선발, 양계인대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병행하여 범 양계인의 축제형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번 박람회는 본회가 주최하였으며, 한국양계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수산부 및 MBC문화방송이 후원하였다.

건축관계법령 개정요청안 제출 축사건축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위해

본회는 지난 9월4일자로 농림수산부에 건축관계법령개정 요청안을 제출하였다.

개정요청안에는 △축사의 신·증·개축시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갈음토록 조치요망 △축사의 허가신청시 주민동의서 첨부제도 중지 △축사의 건축·증·개축시 방화구역 설치에 대한 배제규정설치 요망 등 5개 조항에 걸쳐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들어 개정요청안을 제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 관계법령 개정 요청안

1. 축사의 신축, 개축, 증축의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가. 관련 규정 :

○건축법 제5조 제2항 제3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2

나. 내용 :

읍면의 지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안에서 축사를 설치코자 할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2를 개정하여 주시기 바람.

다. 사유 :

○축사 건축시 절차의 간소화로 주민편리 도모

○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을 건축시는 전문시설 허가업체가 아니더라도 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로서 갈음하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임

○ 건축법 제6조 제2항 및 동시시행령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대상 건물의 공사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토록 된바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제로 하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이 필요 없으므로 감리비의 절감을 통한 생산비의 감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축사는 대개의 경우 산간오지 등 주택지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게 되며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누구나 시공할 수 있는 단순 건축물이므로 굳이 허가제를 할 필요가 없음.

2. 축사신·개·증축 허가시 주민 동의서 첨부제도 폐지 요망 :

현행건축법상 일정규모이상의 축사를 건축(신축·개축·증축)코자 할 때는 해당지역 시장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축사의 건축허가를 받고 자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만 첨부하면 건축허가신청이 가능(90. 6. 18자, 건설부 건축 0125 4-15066)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허가청에서는 법에도 없는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허가신청서의 접수조차 하지 않아 민원인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을뿐 아니라 수입개방을 앞두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건축허가신청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축사의 신축·증·개축시 방화구역설치에 대한 배제규정 설치 요망

가. 관련규정

○ 건축법 제16조, 제17조

○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

나. 내용

건축물 연면적의 1,000m 이상일 때는 방화벽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바 농림수산부 축영 27420-917(91.7.6)에 의하면 축사시설의 자동화설치 등으로 그 용도상 불가피하다면 건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보아 방화 구획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활용코자함에 있어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앞의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的 규정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성 재료로 되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이지 건축물(축사)의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을 때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허가취득 및 자동화 시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목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자동화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다. 사유

축산경영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축사의 증·개축이 불가피한 여건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 이상일 경우 방화구획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사시설 자동화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건축비의 과다소요로 양축농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가축의 생리적 특성상 방화구획 설치가 불필요함.

4. 축사의 표준설계도 활용시 공사 감리자 지정에 대한 배제 규정설치 요망

가. 관련 규정

○ 건축법 제6조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나. 내용

현행 건축법상 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건축을 할지라도 건축허가 대상인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의 공사시는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표준설계도를 제작, 배포하여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음은 축사를 규격화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은 물론 비용을 절감키 위한 것 이므로 공사지도 및 감리업무를 허가청이 대행도록하여 감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항은 앞의 제1항에서 요청한 축사의 신증·개축시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로 갈음도록 조치된다면 개정할 필요가 없는 내용임.

5. 양계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시 규모에 관계없이 대체농지 조성비 전액 면제 요청 가. 관련 규정

○농지전용 업무처리심사 세부규정(농림수산부 훈령 제713호) 제2조 제1항 제2호

○동규정 제12조 제2항 별표2의 제3호
나. 내용

전기 규정에 의하면 농가가 양축시설을 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3,300m^2$)을 농지전용을 할시는 $3,000m^2$ 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초과시는 50% 해당액만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3,300m^2$ 미만은 신고제도 전액 면제토록 되어 있으나 일선 허가청에서 양계농가의 경우 10,000수 이상만 되면 기업 또는 전업에 해당되므로 농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거부할뿐 아니라 허가를 받아도 조성비의 면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양계업을 영위하는 자는 무조건 농가로 인정(법인 제외)하여 전용 규모에 관계없이 전액면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유

(1) 양축농가가 수입개방 및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을 확장 또는 이전 신축하여야 하는바 이 경

우 축사의 건축이 가능한 대지 또는 잡종지를 새로이 확보키 어려운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이용하여 축사를 설치코자 하는데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됨.

(2) 정부에서는 수입개방 및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점진적으로 부업 양축농가를 전업농가로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부업 양축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대체농지조성비를 면제토록 해 놓고 전업시설 규모인 $3,000m^2$ 이상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토록 조치(생계유지 차원으로도 현재 설정으로 보아 $10,000m^2$ 는 되어야 함)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전업 양축농가를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3) 우루파이라운드와 별 관계가 없는 양어장, 양만장 시설 등을 위한 전용허가는 93.12.31까지 대체농지조성비를 전액 면제해 주면서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다면 즉각적인 피해를 당하여야 하는 양축시설을 위한 농지전용시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음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하며 더구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만 시설을 5년 이내에 확장시는 기존의 전용시설 면적까지 포함하여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은 심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특별회계법(안)의 의견 제출

본회 및 낙농, 양돈협 공동으로

본회는 농림수산부 공고 제91-41호(91.9.4)에 의한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특별 회계법 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의견을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난 9월18일 농림수산부에 제출하였다. 의견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특별회계법(안)의견

입 법 예 고 안	개 정 안	개 정 사 유
<p>제 4 조(세출)</p> <p>4. 과수, 채소, 화훼, 임업 등 성장 작목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필요 한 경비</p> <p>제 5 조(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p> <p>1) 국가는 매 회계 년도마다 별표1 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 되는 관세액 전액과 사료 관리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 및 별표2의 축산 기자재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부가가치 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p>	<p>제 4 조(세출)</p> <p>4. 과수, 채소, 화훼, 임업, 축산 등 경비</p> <p>..... 경비</p> <p>제 5 조(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p> <p>1) 국가는 매 회계년도마다 별표1 의 수입농수산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는 관세액 전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므로 축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함.
	<p>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당해 관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에 부과, 징수된 금액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 등 축산업 원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여 축산물생산비 인하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임. 경종업부분의 비료, 농약, 농기계 등에 대하여는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어 축산 원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적용의 형평상 부당함. 축산농가의 부담이 되는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마련한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임. 제 1 항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목장 이전 양도세면제폐지결정 철회탄원서 제출 본회 및 낙농, 양돈협 공동제출

지난 9월13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본회 및 낙농, 양돈협회가 공동으로 목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폐지결정에 대한 철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 원 서

- 국정수행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축산업은 외국

산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정책으로 날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어 양축가의 폐업과 도산이 속출하고 있고, 조상대대로 지켜온 정든 고향산천을 등진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참담한 모습이 도처에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속에서도 축산을 영위하며 나름대로 경영개선 노력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자구책 마련에 열중하면서 축산을 지키려는 우리 양축가의 의지야 말로 진정한 애국농민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 양축가가 실망하지 않고 안정기반을 마련하도록 강력한 정책의지로써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당면과제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지난 9월13일의 경제장관 회의에서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

제제도(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은 우리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너무도 일방적인 처사로써, 우리 양축가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나라 축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도시근교 혹은 식수원 인접의 목장을 산간지역 등 목장지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과 지원을 통해 도시근교의 축산을 원거리로 이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위적인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되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함에도 오히려 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조차 없애겠다는 발상은 엄청난 실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화 등으로 부득이 목장을 이전해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축산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환경오염 근절차원에서 축산분뇨 처리 규정을 강화시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난 9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시책에 역행하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장환경의 개선은 가급적 도시근교에서 이전되도록 함이 최상의 방법이나 현실여건이 어려워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이전을 촉진시키는 제도마련이 요청되는 사안임에도 이전시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려 함은 정부의 환경개선 정책에 일관성을 결여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 심한 의구심을 제기케 합니다.

셋째로, 축산업의 경쟁력강화는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자 우리 축산업이 안고 있는 목표임에도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함은 양축가의 부담과중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더나은 목장터전으로 옮겨 경영개선을 도모하려는 양축가의 뜻을 꺾고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함은 정부

의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에도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에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 폐지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탄원하오니 우리나라 축산업의 어려운 현실 상황을 감안하시어 특별한 정책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에 대해 정부는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시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하였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포

정부는 그간 입법예고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지난 9월7일자로 최종 확정하여 대통령령 제13, 462호로 공포하였다.

이로써 축산분뇨는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제대상에서 동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게 되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규정보다 대폭 강화되어 마련된 이번 시행령에는 닭·오리사육시설은 면적이 500m² 이상일 경우 신고대상으로 하였는데 종전과 달라진 것은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면적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점이다.

같은 농장내에 계사가 2동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사의 시설면적을 합산하여 시설규모를 산출 적용도록 되어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공포

동법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9월9일 시행규칙도 확정되어 총리령 제392호로 공포되었다.

그간 동법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제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규 모
돼지사육시설	면적 250m ² 이상 1,400m ² 미만
소사육시설	면적 350m ² 이상 1,200m ² 미만
말사육시설	면적 350m ² 이상 1,200m ² 미만
닭·오리사육시설	면적 500m ² 이상
양사육시설	면적 500m ² 이상

비고: 동일 사업장내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한다. 다만, 다른 종류의 시설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의 합이 1이상이면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 시설로 본다.

$$\begin{aligned}
 & \text{제1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 \text{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 \text{제2축산폐수배출시설의 면적} \\
 + & \text{해당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기준면적} \\
 + \dots & \geq 1
 \end{aligned}$$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는데 본회에서는 축산 폐수정화시설 면제대상시설로 고상식계사 및 평사에 의한 육계, 종계, 채란계사육시설에 대한 의견서(91.9월호 게재)를 제출한 바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축산폐수정화시설에는 △협기성 발효처리 △호기성 발효처리 △화학적 중화처리 △퇴비화처리 △기타 등이 있는데 양계사육시설에는 퇴비화처리방법이 주로 해당되고 있다.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는 이미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증설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축산폐수배출시설 규모의 합계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신고는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계도서(법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당해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자

가설계도서로 한다)를 첨부,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면제자 지정을 받은 자의 준수사항에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축분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집수조에 협잡물·토사·빗물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설치해야 하고, 집수조 및 스크린을 수시로 청소해야 하며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거나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기준(제54조 관련)

구 分	구 조 및 규 격
퇴비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사는 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분을 30일 이상 충분히 건조·발효하여 퇴비화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지붕을 설치하여 벗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바닥은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 축산폐수가 지하로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 •

**위생적이고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양계인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